

안전보건위원회규정

2026. 03. 26.

IPARK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안전보건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에는 대표이사와 독립이사를 포함하되, 1명 이상의 안전보건 전문 이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시, 장소, 소집 목적 및 안전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의·의결 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매년초] 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방침, 목표에 관한 사항
- ㄴ. 전사차원의 안전·보건 및 품질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 구성인원의 역할 및 투자, 인력 양성계획 등 포함
- ㄷ.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 ㄹ.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 [매분기] 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점검 및 품질관리 결과에 관한 사항
- ㄴ.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이행 현황 포함
- ㄹ.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개선 절차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관한 사항
- ㅂ. 협력회사 안전보건 평가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ㅅ. 안전보건교육 실시 되었는지의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ㅇ.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대피/보고 등 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ㅈ. 안전보건 관련 규정의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
- ㅊ. 그 밖에 회사의 안전보건 및 품질관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전담조직(본사)은 제2항의 개선 요구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의결 방법)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는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보고의무) 위원회는 심의·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사항에 관하여는

승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간사는 안전보건전담조직의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안전에 관한 제안 설명은 간사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상정 안전명과 주요 논의내용을 기록한다.

제11조 (기타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하여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고를 받거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